

#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56回平昌郡議會

第 1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1998年 6月 23日(火) 11時16分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1. 第56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期及議事日程決定의件
2. 平昌郡公有財產管理條例의改正條例案
3. 平昌郡稅減免條例의改正條例案
4. 平昌郡草地造成審議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5. 第56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 附議된案件

1. 報告事項 \_\_\_\_\_ 2面
- ◆ 3分自由發言(劉燉文議員,金樂雲議員)의件 \_\_\_\_\_ 2面
2. 第56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期及議事日程決定의件(議長提議) \_\_\_\_\_ 5面
3. 平昌郡公有財產管理條例의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_\_\_\_\_ 6面
4. 平昌郡稅減免條例의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_\_\_\_\_ 6面
5. 平昌郡草地造成審議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平昌郡守提出) \_\_\_\_\_ 8面
6. 第56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_\_\_\_\_ 10面

(11時16分 開議)

○ 議長 李相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6회 평창군의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2대 평창군의의회를 사실상 마무리 짓는 마지막 회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報告事項

(11時17分)

○ 事務課長 李京植 : 사무과장 입니다. 폐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 議長 李相薰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分自由發言(劉燉文議員,金樂雲議員) 의件

(11時20分)

○ 議長 李相薰 : 다음은 유돈문, 김낙운 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어 평창군의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유돈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劉燉文 議員 : 유돈문 의원입니다.

제56회 마지막 임시회기에 발언의 시간을 배려 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군 남부에 위치한 미탄면은 3개군을 연결하는 접경지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평창군의 하단으로 행정지원이 소외된 면으로 되어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옛부터 산 좋고 물 맑은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여서 정선으로 가는 골원이 쉬어 갔다는 역촌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68년도에는 광산이 11개나 있을때는 인

구도 7천인구가 되었던 면이기도 하였는  
데 정부의 광산합리화 조치로 인구도 감  
소되었으나 광산합리화 특별지구로도 집  
행부의 업무 소홀로 광산특별지구에도  
제외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영월군 북면과는 경계를 이루고 있  
는 면으로 차라리 영월군이나 정선군이  
면 광산합리화 지역으로 되지 않았나 하  
는 면민들의 원망이 많습니다.

'90년도 군에서는 맑은물을 이용 내수면  
소득사업이란 계획만으로 환경오염과 맑  
은물 보존 대책은 고려치 않고 우선 주  
민소득 사업이란 안일한 생각으로 집행  
부에서 송어양식장을 16개나 무분별 허  
가를 해줌으로 개울오염은 물론이요 자  
연의 맑은물에만 서식하는 열목어와 두  
구리가 멸종되고 송어장 폐수로 인한 환  
경오염과 악취로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  
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식장이 오염되어 송어판매도  
되지 않아 송어장이 존재 위기로 폐쇄  
직전에 있으므로 개울만 오염되는 실정  
이오니 앞으로 '99년도에 우수인용 연장

시에는 면민들의 고충을 감안 하시기 바  
라며 지금 면민들의 생활고충과 물 오염  
으로 피부병마저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  
다. '99년도에 우수인용허가시 면민들  
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면민들  
의 동의를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  
며 만약 면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  
용허가를 해주시면 주민들이 일제히 강  
력 대처 할 것을 말씀드리며 최악의 경  
우는 면민들이 군청까지 가서 반대 데모  
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미탄면 낚시터 허가는 김용욱 군수  
가 면민들의 생활불편과 물오염, 그리고  
개울물을 막은 상태여서 홍수때 물이 빨  
리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마시 제  
방 들망태가 파여서 바닥이 드러나면 홍  
수시 제방붕괴 위험이 있는데도 주민 여  
론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개인 한사람을  
위해서 허가 해줌으로써 주민들의 민원  
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허가사항을 재조  
사하여 허가취소 하시기 바라며, 만약  
그렇지 않을시는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 하겠다는 말씀을 알려 드리오니 적

절한 조치를 강구 할 것을 촉구 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相薰 : 유돈문 의원 수고 하  
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  
기 바랍니다.

○ 金樂雲 議員 : 초대의회를 이어서  
2대 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이상훈 의장님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발전의 기틀이요 근간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의 기대  
와 희망속에 출범한지도 벌써 7년 2개월  
이라는 많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너무도 제한된 제도권 속에서 걸음마 단  
계의 한정된 의정활동, 큰 기대에 부풀  
어 있는 주민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면서 남다른 열정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30년만에 부활되었다고는 하나 처음이나  
다름없는 생소한 자치업무, 의회와 집행  
부 그리고 주민들까지도 자치제도를 새

롭게 배우고 연찬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초대 초창기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의원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는 책임감, 의무감으로 밤잠을  
설칠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나마도 미흡하기는 하나 제도의 보완  
과 자치의식 고취 등 꾸준한 지방자치  
발전을 이룩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간에 반목과 갈등  
관계로 군민 여러분에게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것 심히 송구스럽게 자성하면  
서 이 모든 것이 성장의 수레바퀴가 구  
르는 미세한 잡음으로 이해 하시리라 믿  
습니다.

주민의 참된 대변자로서 분출되는 주민  
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모든  
것 군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민선군수 3년의 평창군은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계발과 창의 보다는 고립과 위축된 분위기 속에 자치발전에 역행한 모순의 시간들이 너무 길게 느껴졌으며, 암울하고 참담했던 길고긴 터널을 지나온 듯한 혼미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임기 10일을 앞둔 시점에서 김용욱 군수의 구속은 우리 모두의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가슴 아파해야 할 고뇌의 순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도 많은 화제와 사건들을 뒤로 한채 제3대 의회의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기대를 한몸에 안고 당선된 민선 2기 군수당선자와 함께 21세기 평창군을 앞차게 이끌어 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I M F 체제의 최대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부끄러운 화제의 대상이 아닌 발전 모델의 대표적인 평창군, 전국에서 가장 편안하고 살기 좋은 평창군 건설에 최선을 다하므로 자치경영에서 승리하는 군으로 발전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머리를 맞대고 의정활동을 함께 해온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자치발전에 아낌없이 참여해 주신 집행부 김재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사를 드리면서, 평창군과 군민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李相薰 : 김낙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2. 第56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日程決定의件(議長提議)

(11時31分)

○ 議長 李相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6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參 照 >  
. 議事日程  
( 끝에 실음 )  
.....

- 3. 平昌郡公有財産管理條例증改正條例案
  - 4. 平昌郡稅減免條例증改正條例案
- (以上 2件 平昌郡守提出)

(11時32分)

○ 議長 李相蕪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趙圭植 : 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먼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증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와 내무부공유재산관리지침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가 불일치 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관련 법규를 일치 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중 현행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고, 둘째,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함에 따라 공장용지등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며, 셋째, 대부분 또는 사용료의 요율규정중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고 넷째 현행주거용 건물의 경우 토지 사용료의 요율이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은 25/1000, '81년 4월 30일 이후 건물은 50/1000의 이원화 되어 사용료 격차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됨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경우 사용료 요율을 25/1000으로 일원화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사용료 부

담 경감과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항 국가유공자 1급 내지 6급에게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와 이륜자동차중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에 사용하는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15인이하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감면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자동

차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제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같은조 제3항의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제4호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제1항에 장애인 1급내지 3급에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중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15인이하 승합자동차와 1t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추가하여 이중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2항에 자동차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제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다음에 제4호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 參 照 >

- 平昌郡公有財産管理條例중改正條例案
- 平昌郡稅減免條例중改正條例案
- ( 以上 2件 - 附錄에 실음 )

.....

○ 議長 李相薰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 檢討報告
  - ( 끝에 실음 )
- .....

그러면 제안설명들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아무소리가 없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平昌郡草地造成審議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平昌郡守提出)

(11時37分)

○ 議長 李相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畜産課長 金在南 : 축산과장 김재남입니다.

평창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초지법이 법률제5324호 '97년 4월 10일자로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폐지 조항은 초지법 제4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폐지되는 조례는 평창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 입니다.

평창군조례 제637호 '80년 6월 17일 구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초지조성 및 허가시 사전 측산과, 산림과, 농정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등 관계 실무자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을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參 照 >

· 平昌郡草地造成審議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 附錄에 실음 )

○ 議長 李相燾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 끝에 실음 )

그럼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측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第56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  
議員選出의件

(11時40分)

○ 議長 李相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  
항, 제56회평창군의회의회임시회의회의록서명  
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김낙  
운 의원, 김종영 의원을 제56회 평창군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  
으로 이번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3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  
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군정  
업무 속에서도 의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  
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  
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  
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평창군의회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와 폐회를 선포합니다.

(11時41分 散會)

○ 出席議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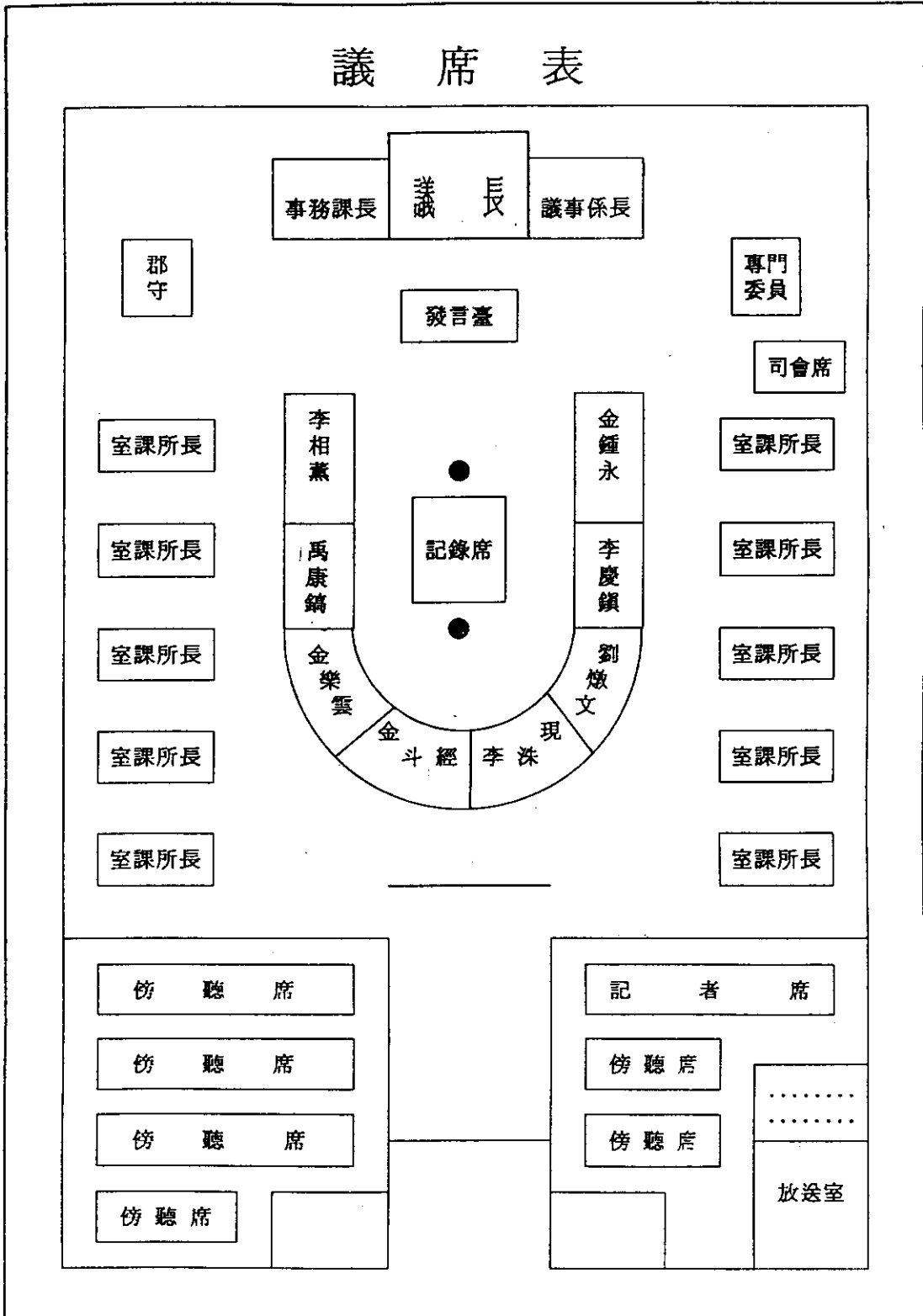
|       |       |
|-------|-------|
| 議 長   | 李 相 薰 |
| 副 議 長 | 金 鍾 永 |
| 議 員   | 李 慶 鎭 |
| 議 員   | 劉 燦 文 |
| 議 員   | 李 洙 現 |
| 議 員   | 金 斗 經 |
| 議 員   | 金 樂 雲 |

○ 出席公務員

|        |       |
|--------|-------|
| 副 郡 守  | 金 在 君 |
| 保健醫療院長 | 金 鎭 佰 |
| 農村指導所長 | 李 燦 錫 |
| 企劃監査室長 | 姜 慶 錫 |
| 民願奉仕室長 | 李 永 德 |
| 內務課長   | 金 學 根 |
| 財務課長   | 趙 圭 植 |
| 地域開發課長 | 申 大 松 |
| 觀光文化課長 | 金 永 錫 |
| 福祉課長   | 朴 靜 子 |
| 農政課長   | 辛 永 善 |

|   |   |
|---|---|
| <p>商工課長                    劉 元 鍾</p> <p>畜産課長                    金 在 南</p> <p>建設課長                    朴 玟 昌</p> <p>民防衛災難管理課長      宋 在 明</p> <p>技術普及課長              白 淳 圭</p> <p>○ 議會事務課</p> <p>事務課長                    李 京 植</p> <p>議事係長                    全 完 鐸</p> <p>地方行政主事補            李 錠 均</p> <p>地方行政主事補            鄭 成 文</p> <p style="text-align: center;">【 議 席 表 】</p> <p>○ 議席表 ( 17면에 실음)</p> | <p>( '98. 6. 10)</p> <p>○ 의안처리사항</p> <p>·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br/>조례안</p> <p>·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안</p> <p>·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br/>조례안</p> <p>(이상 3건-'98.5.4 - 평창군이송)</p> <p>○ 문서발송</p> <p>· 가칭국립농업정보품질관리원평창군유<br/>치를 바라는 건의서</p> <p>( 1998. 5. 14 - 농림부장관, 강원도<br/>행정자치부장관, 국회의원)</p> <p>○ 일반문서접수사항</p> <p>· 평창부군수발언신청</p> <p>( '98. 6. 22. - 평창부군수)</p> <p>· 3분자유발언신청</p> <p>( '98. 6. 22. - 유돈문, 김낙운의원)</p> |
| <p style="text-align: center;">【 報 告 事 項 】</p> <p>○ 제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br/>(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br/>의거 소집)</p> <p>○ 의안접수사항</p> <p>○ 평창군수 제출</p> <p>·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p> <p>· 평창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br/>례안(이상 2건-'98. 5. 19)</p> <p>·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p>   |   |

# 議 席 表



# 의 사 일 정

○ 제5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1998. 6. 23 (1일간)

| 일 자      | 차 수               | 부 의 안 건   | 비 고 |
|----------|-------------------|---|-----|
| 6. 23(화) | (11:00)           | ○ 개 회 식<br>- 평창군의회 청사 보수 및 증축공사 경과 보고<br>- 평창군의회 청사 보수 및 증축공사관련 감독공무원 표창  |     |
|          | 제1차본회의<br>(11:10) | 1. 제5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br><br>2.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br><br>3. 평창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br><br>4. 평창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br><br>5. 제5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

#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6. 10 평창군수(재무과장)
- 나. 회부일자 : 1998. 6. 23
- 다. 상정일자 : 1998. 6. 23 제5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 제안이유

- 국유재산법령 개정등의 사유로 공유재산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공유재산관리 지침(내무부) 및 강원도공유재산 관리조례등과 불균형한 사항을 일치시킴으로써 효과적인 재산 관리와 행정의 통일성 유지

## 3. 주요내용

- 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중 현행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개정(안 제6조제1항제1호)
- 나.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 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함에 따라 공장용지등(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안 제22조제8호 신설)
- 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규정중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 시가표준액"으로 개정(안 제23조제2항)

라. 현행 주거용 건물의 경우 토지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이 '81. 4. 30일 이전 건물은 "1000분의 25", '81. 4. 30일 이후 건물은 "1000분의 50"으로 이원화 되어 사용료(대부료) 격차에 따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됨으로 주거용 건물의 경우 사용료(대부료)요율을 "1000분의 25"로 일원화 하여 지역주민의 사용료(대부료) 부담을 경감(안 제23조제6항)

####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 기업 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초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이며
- 아울러 부동산의 보상에 있어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던 것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는 것임.
- 기타 자구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5. 19 평창군수(재무과장)

나. 회부일자 : 1998. 6. 23

다. 상정일자 : 1998. 6. 23 제5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 제안이유

-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국가유공자 1급 내지 6급에게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와 이륜자동차중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 하던 것을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에 사용하는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15인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항)
- 나. 자동차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제2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같은조 제3항의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제4호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신설함.(안 제2조제3항)



다. 장애인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은 4급)에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중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와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추가하여 이중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 제1항)

라. 자동차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제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다음에 제4호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신설함.(안 제4조제2항)

####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할 수 있음에 따라
- 장애인 복지대책 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애인의 자동차세 지원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수혜의 폭이 넓어져 장애인 삶의 의욕 고취와 재정적 지원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 기타 자구 및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5. 19 평창군수(축산과장)
- 나. 회부일자 : 1998. 6. 23
- 다. 상정일자 : 1998. 6. 23 제5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 제안이유

- 가. 상위법인 초지법이 법률 제5324호('97. 4. 10)개정공포로  
폐지
- 나. 폐지조항 : 초지법 제4조(초지조성 심의위원회)
- 다. 폐지되는조례 : 평창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조례제637호  
80. 6. 17)
- 라. 내 용 : 초지조성 심의 위원회를 폐지하여 초지조성 및  
전용 허가시 허가절차를 간소화 하는등 농업인의  
불편사항 해소 조치임.

## 3. 주요내용

-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997년 4월 10일 초지법중 개정법률안이 공포 (법 제5324호)됨에 따라 지금까지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를 폐지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이 폐지됨에 따라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게 되는등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가 됨.
- 기타 자구 및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